#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542호

2. 발 의 자 : 장상기 의원

3. 발의일자 : 2019. 3. 29.

4. 회부일자 : 2019. 4. 3.

## Ⅱ. 제안이유

○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Ⅲ. 주요내용

- 1.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2.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3.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4. 특수학급 설치 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Ⅳ.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3월 29일 장상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542호로 발의되어 2019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책무, 계획의 수립, 설치기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90,780명으로 이 중 28.6%인 25,919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41명 중 34.5%인 4,397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대부분은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 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2018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1)

구분		특수학교 및	일반	전체학생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일반학급	근세탁경
전국	인원(명)	26,337	48,848	15,595	90,780
건축 	비율(%)	29.0	53.8	17.2	100.0
서울	인원(명)	4,537	6,056	2,148	12,741
시호	비율(%)	35.6	47.5	16.9	100.0

<sup>1) &#</sup>x27;2018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2018.6.28

- 그러나 일반학교의 경우 교육공간 부족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특수학 급이 제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학교는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정원기준<sup>2)</sup>을 초과하여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sup>3)</sup>.
- 더욱이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이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학급이설치되어 있는 원거리 학교로까지통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⁴).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노 후된 특수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 및 학교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 한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표-2] 2019 특수학급 설치 현황5)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18	71	74	426	699	199	289	86	252	782	1,314
2019	89	94	442	731	201	291	88	256	820	1,372
증감	18	20	16	32	2	2	2	4	38	58

○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확대 거부나 장애 학생의 입학포기 종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sup>6)</sup>. 특수학급 설치

<sup>2)</sup> 특수학급 1실당 학생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제1항)

구분	유치원	초·중	고	
학생수(명)	4	6	7	

<sup>3)</sup> 조성철 기자, '15개 시·도 특수학급 교사 배치기준 못 지켜', 한국교육신문, 2018.1.8. 기사 참조.

<sup>4)</sup> 유대근 기자, '특수학교 22곳 신설...장애학생 장거리 통학 없앤다', 서울신문, 2017.12.4. 기사 참조

<sup>5) 2019</sup> 서울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울시교육청

<sup>6)</sup> 백운 기자, '발음 잘 안 된다"입학 거부한 초등학교...검찰 고발', SBS뉴스, 2018.5.3. 기사 참조, 권혁 상 기자,박재천 기자, '특수학급 설치 어렵다는 이유로 전학 거부는 장애인 차별', 연합뉴스, 2018.7.18.

및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급의 설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최근 5년간 특수학급 설치요청 민원 및 미수용 비율

구분	특수학급 설치요청 민원, 권고 건수(2015~2019)	수용건수	미수용 건수	미수용 비율	비고
유	47	41	6	12.8%	
초	96	79	17	17.7%	
중	26	21	5	19.2%	
고	14	10	4	28.6%	
계	183	151	32	17.5%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과 설치기준 및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 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사참조, 권혁준 기자, '인권위"특수교사 업다"며 장애학생 입학 거부한 학교장 고발', 뉴스1, 2018.5.3. 기사 참조,

- 2)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입학배정시 또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입학· 전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7조7)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8)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배정은 「특수교육법」제17조<sup>9)</sup>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장애학생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u>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u>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 대체기구 등의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9)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u>교육장 또는 교육감은</u>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 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u>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u>,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7) 「</su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정학교로의 입학 및 전학의 의사 표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배치의 권한이 있는 교 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원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학생의 배치를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법」제4조10)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11)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특수교육법」제27조제 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더욱이 현재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청하는 권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안 제5조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 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사료됩니다.
- 다만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학교공간의 부족 및 특수교사의 부재를 이유 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거나 장애학생의 입학 포기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sup>10)</sup>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11)</sup>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는 한편, 각급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 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 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up>12</sup>).

[표-4] 공사립 급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13)

41	공립			사립			합계		
학교급	알변급	특수학급	살비율	알변급	특수학급	쇍뱮	알변급	특수학급	살비율
유	772	73	8.6%	3,206	0	0%	4,051	73	1.8%
초	17,038	695	4.1%	793	0	0%	17,831	695	3.9%
중	6,325	287	4.5%	2,197	0	0%	8,522	287	3.4%
고	3,352	220	6.6%	6,023	29	0.5%	9,375	249	2.7%
계	27,487	1,275	4.6%	12,219	29	0.2%	39,779	1,304	3.3%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교육수요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 및 학교·교육청의 과도한 부담, 학교와학부모 간의 분쟁발생 소지, 장애 학생배치에 있어서 전문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배제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sup>12)</sup> 신태현 기자,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학급 증설로 사회통합을"-사립학교 거부 빈번 고충 토로", 뉴스토마토, 2018.12.18. 기사 참조

<sup>&</sup>quot;……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도 "특수교육법 27조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국 교육청이 미설치 학교를 고발한 경우는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차로 권고했을 때 설치 안하면 2단계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현재 처벌 조항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법제화 논의까지 이뤄질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립도 그렇고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입학포기 강요한 학교장 검찰 고발", 2018.5.3. 보도자료 참조. "······올해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추첨제)을 통과한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특수교 사나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 종용을 당해······(중간생략)······인 권위 조사결과, 학부모는 이미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학교 측이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하다는 상황 설명을 넘어 향후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 그러나 안 제5조제1항은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1조(목적)의 규정과 같이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 치하는 것을 전제로 특수학급의 설치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보다 학교의 장에게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생 배정에 대한 권 한이 없음을 이유로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요청 방법을 보다 손쉽게 하여 상위 법률이 추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sup>14)</sup>.

- 이와 관련하여 입법·법률자문 의뢰 결과 모두 안 제5조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15)

#### 15) 입법 법률 자문 내용 요약

구분	내 용
의견1	안 제5조는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제3장(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율 목적 및대상이 다름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됨. 더욱이 안 제5조는 특수학급 설치의 신청방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의견2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배치기준과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서로 다른 영역이며,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신청방법 등 세세한 규정이 없는바, 법의 공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동 조 례안은 적접한 것으로 사료됨.
의견3	동 조례안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교육감이 입학배정을 하거나 그 학부모가 입학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자 한것인바, 이와 같은 전제를 기초로 하는 경우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sup>14)</sup> 대법원 2006.10.12.,선고 2006추38

<sup>&</sup>quot;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중간 생략)…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아니다.

-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 용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행정 관리담당관-4589.,2019.4.8.), 안 제2조제1호에서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학생으로 별도 정의하였는바, 장애학생과 특 수교육대상자의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5. 입학 ·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차별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2.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58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 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 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